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8-151호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과-2013-01호(2013.01.22.)로 조합설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과-5891호(2018.05.28)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강 남 구 청 장****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명칭 :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1
- (2) 구역면적 : 64,293.8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개포주공3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영수)
-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506, 청우빌딩 5층(개포동)
-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고시일 : 2018. 10. 19.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2015. 9. 30.)

4.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요지

-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 대지면적 : 57,329.80m²

○ 연면적 : 233,596.98m²

○ 건폐율 : 19.42%

○ 용적률 : 249.96%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23개동 1,3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주 택																														
	규모별세대수(전용면적기준)㎡																														
	계	49	49	59	59 B1	59 B2	76	84 A	84 B	84 C	84 D	94 A	94 B	94 C	106A	106B	106C	106D	131	T82	T86	T89A	T89B	T91	T99	T105	T109	T124	T130	T136	T148
	1320	23	85	157	112	49	152	140	130	103	103	31	32	32	31	32	31	32	31	1	1	1	1	1	1	1	1	1	1	2	2
토지등 소유자	1160	7	16	157	112	49	150	137	129	102	101	30	32	32	23	15	23	16	23	1	1									2	2
일반분양 (보류시 설편함)	69 (6)						(2)	1(2)	(1)	1	2	1			8	17	8	15 (1)	8			1	1	1	1	1	1	1	1		
소형주택	85	16	6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 신설 : 6,964m²(도로 2,492.10m², 근린공원 4,471.90m²)
- 폐지 : 해당사항 없음

(4) 변경내용

- 정비사업비 증가에 따른 추정 비례율 변경(99.7130% → 94.25%)
- 정비사업비 변경 등

기정	변경	증(감)	비고
450,720,400천원	543,800,000천원	93,913,000천원	45,072,040천원

5.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강남구청 주택사업과(☎ 02-3423-6063) 및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 02-572-2770)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끝.